

1. 납부자

가. 업체명 : (주)에어로닉스

나. 대표자 : 오혜영

다. 사업자등록번호 : 721-81-00***

라. 주소 :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601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 납부할 금액 : 1,395,260원

가. 원금 : 1,209,500원

나. 판결이자 : 128,160원(2020. 8. 12.(화) 기준)

* 기준일 이전 납부 원할 시 연락바랍니다.

다. 송달료 : 57,600원

3. 수입과목 : 계약정산액(계약번호 : 2017-****-0675)

4. 납부기한 : 2020년 8월 12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재정운영담당관(02-2079-6752)

●소방청공고제2020-10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소 방 청 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복잡,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안 제5제3항)

나. 통로유도등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토록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

다. 3선식 유도등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3항)

라.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0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등 미흡한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안 제2조)

나.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성능기준을 구체화,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 방향전환된 배관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오프셋(OFFSET)규정 신설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건축구조기준 적용, 소방시설 구성요소별로 지진하중 산정방법 및 앵커볼트 설계 공통 적용사항 규정,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단주기 응답지수별 지진계수를 적용함(안 제3조의2)

라. 수조 방파판 규정을 삭제하고 수조 자체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4조)

마. 앵커볼트 설계방법을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5조)

바. 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배관과 관통구(배관 슬리브)와의 이격거리를 호칭구경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